

시벨코 제품판매약관

V. 1-9-2020

1. 정의

본 시벨코 제품판매약관(이하 "본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 및 해석 규칙을 적용한다.

- (a) **매도인:** 판매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시벨코 그룹의 법인체.
- (b) **매수인:** 제품을 구매했거나 구매하기로 합의한 개인, 회사, 기업, 조합 또는 기타 법인체.
- (c) **인도일:** 주문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기타 매도인이 달리 명시한 인도일.
- (d) **서류:** 제품 판매 용도의 오фер, 견적서, 가격 목록, 발주 확인서, 청구서 또는 계산서.
- (e) **제품:** 매도인이 판매한 제품.
- (f) **지급불능 사태:** 매수인의 지급불능, 매수인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의 개시, 영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단이나 정지 또는 중단/정지의 위험상황의 발생, 해산 및 청산의 결의, 또는 매수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관할권에서 전술한 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g) **주문:** 매수인이 발주하고 매도인이 서면으로 승낙하거나 또는 2(b)항에 따라 제품을 인도하여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문.
- (h) **시벨코 그룹:** 최상위 모기업인 SCR-Sibelco NV와 그 자회사를 포함하는 전 세계적인 소재 솔루션 회사.
- (i) **"포함하여"**라는 용어는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로 해석된다.

2. 제품의 주문

- (a) 매수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매수인에게 주문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발주는 본 약관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는 매수인의 청약으로 간주된다. 매수인은 각 발주서의 정확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b) 매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매수인의 발주서를 거절할 수 있다. 각 발주서/주문서는 매도인이 서면으로 이를 승낙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매수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수인에게 인도된 경우에만 승낙된 것으로 간주된다. 매도인이 승낙하는 시점에, 본 약관과 발주서/주문서의 내용과 조건을 반영한 계약(이하 "제품판매계약")이 체결되며, 다만 본 약관 및 발주서/주문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서면으로 작성한 주문 승낙 확인서에 명시된 조건이 그러한 내용과 조건에 우선한다.
- (c) 제품판매계약의 내용과 조건은 기타의 모든 조건에 우선하며, 매수인에 대한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매도인에 의해 매수인에게 제공된 견적서나 기타 유사한 문서는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확정적인 청약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제품판매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계약서에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의 카탈로그, 기술 자료 (technical data sheet), 가격표, 분석 자료, 기타 문서 및 샘플에 기재된 설명 및 기술(記述) 내용은 제품판매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기타 매도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 (d) 제품판매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사항을 구성하고, 동 계약의 주제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 체결 이전의 모든 서면 또는 구두 합의나 양해를 취소하고 이를 대체한다. 매도인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대한 정정이나 수정은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 (e) 이하의 8(c)항을 전제로, 매수인은 제품판매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어떠한 기술, 특허 또는 보장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함)을 계약체결의 근거로 삼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며, 이를 청구권으로 하는 권리구제수단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다.

3. 가격 및 대금지급

- (a) 제품의 가격은 주문서에 명시되며, 주문서에 가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도일에 유효한 매도인의 가격표(매수인의 요청이 있으면 매수인에게 제공됨)에 명시된 가격으로 정한다.
- (b) 가격에는 제품의 제조, 운송, 수출, 수입, 판매 또는 제품 인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 관세 또는 부가금이 제외되며, 제품의 인도, 보험, 포장, 분류, 조정, 분석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비용과 제품은 매수인에게 별도로 청구된다.
- (c) 매수인은 제품의 인도 전에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매도인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해당 변동 사항을 제품의 인도 전에 최대한 빨리 서면으로 매수인에게 통지한다(여기에는 관련 법률의 변경, 세금 및 관세 인상, 환율 변동, 공급 원가 인상, 매수인에 의한 지연 및/또는 매수인의 요청에 의한 주문 내용 변경 등이 포함된다).
- (d) 청구서 (invoice)는 제품 인도 시점이나 그 이후에 발행되며, 대금지급은 청구서 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에 기재된 통화로 청구서에 기재된 계좌에 전자결제방식의 은행 이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청구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문의해야 한다. 매도인은 제품 인도 전에 해당 계좌로 미리 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e) 지급일이 경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의 지급 판결 전후를 불문하고, 유럽중앙은행의 주요 리파이닝성 프로그램 적용 이자율에 연리 2%의 가산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한다. 지연이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할로 발생하며, 매수인은 지연이자와 함께 미지급대금 및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추심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과 경비를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 (f) 매수인은 적시에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임을 인정한다. 매수인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될 수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지급일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은 제품의 인도 또는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주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또는 다른 분할 인도를 중단하고 매수인의 추가적인 발주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g) 관련 법률에 따라 세금의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요구되지 않는 한(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청구 대금 전액을 수취할 수 있도록 매수인은 해당

감소분을 보충하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매수인은 어떠한 명목의 공제, 상계, 반대청구 또는 원천징수 없이 청구 대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각 당사자는, 기타의 권리나 권리구제수단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수령할 금액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언제나라도 상계할 수 있다.

4. 제품의 인도

- (a)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품의 인도조건은 EXW (Incoterms® 2020 기준)(매수인이 제품의 수령 및 운송에 대해 책임지는 조건)이며, 제품의 인도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매도인의 사업장에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 (b) 매도인의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인도일 또는 그 이전에 매도인이 합리적으로 요구한 모든 지침 및 제품 인도에 필요한 모든 문서, 허가, 승인 및 인가(제품판매계약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매수인이 구비해야 하는 경우)를 매수인이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달리 제품을 수령하지 않거나, 그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인도 지연을 초래하거나 인도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 (i) 매수인은 모든 운송, 보관 및 대기 시간 비용 및 기타 지연이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피해 및 경비를 매도인에게 보상하며, 여기에는 매도인에게 발생한 제품 가치의 하락에 따른 손실이 포함된다;
 - (ii) 인도일 오전 9시에 제품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고 청구서가 발행된다;
 - (iii)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제품이 실제로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제품을 달리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c) 매도인은 제품을 분할하여 인도할 수 있고, 각각의 분할 인도를 물량에 대해서 별도의 제품판매계약을 구성하여 개별적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d) 매도인이 "포괄적 장기계약(call-off)" 조건으로 인도하기로 동의한 경우 양 당사자는 최종기한일(long-stop date)과 인도 준비 기간(lead times)을 주문서에 명시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도인은 언제든지 주문된 제품의 나머지 수량을 즉시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매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e) 인도일(인도 시간 포함)은 단지 예상 일자이며 본질적인 거래조건은 아님을 양 당사자는 인정한다. 매도인은 인도 지연이나 인도 실패에 대해 매수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제품 인도 실패나 인도 지연을 원인으로 제품의 수령 또는 분할 인도의 수령을 거부할 수 없다. 매수인의 유일한 권리구제수단은 미(未)인도 제품에 대해 사전에 지급한 대금을 환불 받는 것으로, 매도인이 제품 인도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 (f) 매수인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수출 규제, 수출 법률, 제한 및 규제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수출 규정). 매수인은 관련 권한이 있는 관리당국에서 요구하는 면허와 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한, 수출규제나 수출규제에 의거하거나, 기술자료, 정보 및 규정을 위반하는 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수출제한 당사자로 등록된 수출제한 및 금지 국가 또는 개인이나 기업, 운송회사에 수출 또는 (재)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5. 권원(title) 및 위험(risk)

- (a) 제품에 대한 위험은 인도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b) 제품의 인도와 관계없이, 제품에 대한 권원은 (i) 매도인이 제품 대금을 전액 수취한 시점(이 경우, 지급 시점에 권원이 이전됨), (ii) 매수인이 제품을 사용, 가공(제품의 원형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상태) 또는 재판매한 시점(이 경우, 이하의 5(d)항에 명시된 시점에 권원이 이전됨), 또는 (iii)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시점 중 먼저 도착하는 시점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c) 제품에 대한 권원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매수인은,
 - (i) 제품을 별도로 보관하며, 제품에 매도인의 소유라는 점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고;
 - (ii) 해당 제품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거나, 위탁하거나 기타 담보물로 제공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iii) 매수인이 지급불능 사태가 되는 경우 매도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 (iv) 매도인이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제품(의 현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며;
- (d) 매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당 제품을 인도하고;
- (e) 매도인이 제품을 검사 및/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사업장에 (언제라도 별도의 통지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최소불가능한 권한을 부여한다.
- (f) 이하의 5(e)항을 전제로, 매수인은 권원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제품을 사용, 가공(제품의 원형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상태) 또는 재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i)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리인이 아닌 독립적인 거래주체로서 행위한 것이며, (ii) 해당 제품에 대한 권원은 이러한 사용, 가공 또는 재판매 직전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g) 매수인에게 권원이 이전되기 전에 매수인이 지급불능 사태가 되는 경우, 매도인의 기타 권리나 권리구제수단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제품을 사용, 가공 또는 재판매할 수 있는 매수인의 권리는 즉시 중지되고, 매도인은 언제나라도 (i) 매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인도를 요구하고, (ii)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품을 회수할 수 있다.

6. 수량 및 증량

제품은 인도 전에 감손된 장비를 이용하여 매도인의 사업장에서 무게가 측정된다. 무게가 감손되었거나 미달하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선의에 입각하여 협의하고, 감손, 미달하거나 또는 초과한 무게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청구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7. 하자에 대한 책임

- (a) 매도인은 제품 인도 시점에 제품이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주문서 또는 관련 청구서에 언급된 사양(언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도 시점에 유효한 관련 제품의 사양. 매수인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제공한다)(이하 “**사양**”)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증한다.
- (b) 상기 7(a)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 발생 전에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은 매수인의 책임이다. 매도인은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에 대해 책임이 부담하지 않는다.
- (c) 중대한 측면에서 제품이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하 “**하자**”)에 관하여서는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i) 제품 수령 시점에 유인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확인될 수 있는 하자의 경우 제품의 수령 후 2영업일 이내에, 또는 (ii) 기타 하자의 경우 하자가 발견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최대한 빨리, 다만 여하한 경우에도 제품의 인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기한 이내에 매수인은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매도인이 요청하는 경우 매도인의 비용 부담으로 제품을 매도인에게 반환한다.
- (d) 이하의 7(e)항을 전제로, 입증된 하자 내용이 전항의 내용에 따라 매도인에게 통지된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자가 있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제품 대금을 환불한다.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가질 수 있는 기타 권리에 더하여, 이것은 하자과 관련한 매수인의 주된 권리구제수단이 된다.
- (e) 다음의 경우에는 7(d)항에 명시된 권리구제수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i) 매수인인 제품을 사용, 변경 또는 가공했거나 다른 제품이나 소개와 제품을 결합한 경우;
 - (ii) 통상적인 마손(磨損), 의도적 손상, 부주의 또는 비정상적인 작업 조건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iii)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변경하여 제품이 사양과 다른 경우;
 - (iv) 제품 인도 후에 제품의 취급, 운송, 보관 또는 관리 방법이 잘못된 경우(매수인의 책임과 위험 부담 아래 매수인의 사업장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과실 포함);
 - (v) 제품 인도 후에 제품이 오염된 경우;
 - (vi) 하자를 확인한 후에 매수인이 제품의 사용을 계속한 경우;
 - (vii) 매수인이 제품을 이미 재판매한 경우; 및/또는
 - (viii) 매수인이 지칭한 사항이나 기타 요건을 매도인이 준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 (f) 주장하는 하자가 (매도인의 책임과 위험 부담 아래 이루어지는) 운송 과정에서 손실이나 피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본 7항을 적용한다. 단, 매수인은 인도 불이행 시점으로부터 21일 이내에 또는 제품의 인도 후 2영업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화물 운송회사의 클레임 관련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구제수단은 독립적인 운송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한정된다.
- (g) 위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은 관련 법률상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배제된다.

8. 손해배상책임

- (a) 이하의 8(c)항을 전제로, 매도인은 계약, 불법행위(과실 포함), 법적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품의 공급 및/또는 제품판매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여하한 손실, 일실이익, 생산손실, 사업손실 또는 기회비용 및/또는 기타 간접, 결과, 특별손해나 정형적 손해배상에 대해 매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b) 이하의 8(c)항을 전제로, 제품의 공급 및/또는 제품판매계약과 관련된 계약, 불법행위(과실 포함), 법적 의무 위반 기타 여하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매수인의 여하한 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 분쟁 또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해당 제품의 판매대금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c) 관련 법률에 의해 책임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본 조항은 매도인의 책임을 제한하며 배제한다.
- (d) 클레임 및/또는 피해 주장이 매도인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위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매수인에게 판매한 후 제품이 판매된(또는 재판매된) 제3자의 클레임이나 피해 주장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부담했거나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진 모든 손실, 피해, 채무, 클레임, 벌금, 비용 및 경비에 대해 매수인은 매도인과 그 계열회사들을 면책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을 유지한다.

9. 불가항력

매도인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로 인하여 의무 이행이 지연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은 제품판매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여기에는 수도/전기 또는 교통망의 장애나, 고장, 천재지변, 홍수, 가뭄, 지진이나 기타 자연재해, 전염병, 유행병, 전쟁이나 무장 충돌, 테러 공격, 폭동이나 시민 소요, 핵 사고나 공격, 화재, 오염, 음속폭음(sonic boom), 악의적 피해, 정부의 조치나 개입, 관련 법률의 준수, 공장이나 기계의 고장, 건물 붕괴, 화재, 폭발이나 사고, 에너지 공급 제한, 노동 또는 무역 분쟁, 파업, 쟁의 행위나 공장폐쇄, 관련 승인의 미비, 비호의적인 교통 또는 기상 상황 및/또는 공급업체나 하청업체의 불이행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의무 이행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하여 제품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0. 해지

- (a) (i) 매수인이 대금지급일에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ii) 매수인이 제품판매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iii) 매수인이 지급불능 사태가 되는 경우, 매도인의 기타 권리 및 권리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매도인은 서면통지를 하여 제품판매계약을 해지하고 주문서 또는 분할 인도 물량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
- (b)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최소 7일 전의 사전서면통지를 통해 매수인과의

제품판매계약을 언제라도 해지하고 주문서 또는 분할 인도 물량을 취소할 수 있다. 9항의 내용을 전제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의해 송납된 주문서를 취소할 수 없다.

- (c)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관련된 모든 청구서상의 지급기한이 즉시 도래하며 매수인은 관련된 이자(존재하는 경우)와 함께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해지 또는 취소 이후에도 명시적 또는 해석상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조항들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11. 일반 조항

- (a) 매도인과 매수인은 제품판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지속 가능한 행동 강령’ (Code of Sustainable Conduct) (매수인의 요청이 있으면 매수인에게 제공됨)을 준수하기로 한다.
- (b) 매도인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법률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포함)을 준수한다.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정책(현재 유효한 내용은 www.sibelco.com/privacy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이루어진다.
- (c) 제품판매계약의 일부 조항이나 조항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위법하거나 또는 집행 가능하지 않거나, 해당 조항이 유효, 합법적이거나 또는 집행 가능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수정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조항 또는 조항의 일부는 삭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수정은 제품판매계약의 나머지 조항들의 유효성 및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d) 어느 당사자가 어떠한 권리나 권리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않거나 그 행사를 지연하는 것(또는 전부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 포함)은 해당 권리나 권리구제수단 또는 기타의 권리나 권리구제수단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해당 권리나 권리구제수단 또는 기타의 권리나 권리구제수단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e)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제품판매계약상의 권리나 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동의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절되거나 유보되어서는 아니된다.
- (f) 제품판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서에 의거하는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각각의 제품판매계약은 주문서로 기재된 또는 시벨코코리아가 달리 서면을 통해 통지한 시벨코 그룹의 특정 주체와 사이에서 체결된다. 매수인은 시벨코 그룹의 다른 주체를 상대로 제품판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다른 주체들은 매수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2. 준거법 및 관할권

- (a) 본 약관, 각 제품판매계약 및 그 주제나 체결 여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이나 클레임(계약 외적인 분쟁이나 클레임 포함)은 매도인의 등록 주소지 관할 나라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해석된다. 당사자들은 본 약관 및 제품판매계약, 주제나 체결 여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나 클레임(계약 외적 분쟁이나 클레임 포함)에 관한 매도인의 등록 주소지 관할 영역 법원의 전속적인 관할권에 철저히 동의하며 동의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명시적으로 그 적용이 배제된다.
- (b) 상기 12(a)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매수인의 주요 자산이 소재하는 관할권에 소송이나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이송요청을 할 수 있다.